

주의: 제공되는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,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서 간행된 원본만이 정확한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항목	내용
지역	대한민국(Korea)
법규명	기후변화대책기본법(안)
문서종류	입법예고(2008년 8월 29일)
대상물질	이산화탄소(CO ₂), 메탄(CH ₄), 아산화질소(N ₂ 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, 육불화황(SF ₆)
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의무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는 매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· 정부는 매년 국회에 연차별 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②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하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내부에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설치 ③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총배출량 통계를 작성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」에 따라 국가보고서 제출 · 정부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로부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받아야 함 · 정부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음 ④ 기후변화대응 기금의 설치 및 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무총리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·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/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
사업자 의무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 · 정부로부터 일정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은 자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, 배출허용량을 보유한 자는 이를 다른 기업 또는 사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
미준수시 처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7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관청에 납부 · 30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시행기관	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(http://www.pmo.go.kr/)
발효일자	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(제17조): ·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(제20조), 배출허용량의 거래(제21조):
작성일자	2008년 10월 8일

N-CER (Network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)

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센터에서는 N-CER의 서비스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